

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

(의안번호 제1167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6. 30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9. 7. 14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08. 7.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의결

2. 주 문

○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

3. 제안이유

○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함.

4. 주요내용 : 별지 참조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“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” 로 되어 있으며, 지출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.
-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“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” 로 되어 있음.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는 긴급 재해대책을 제외한 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
- 2008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가축방역 통제소 운영비 등 4개 사업에 427,596,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68,607,720원을 지출, 58,988,280원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.

- 예비비로 지출한 4개 사업 중 가축방역 통제소 운영, 가뭄대책을 위한 소류지 준설, 생활용수 암반관정개발에 대한 예비비집행은 시급성이나 목적상 예비비 지출사유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,
- 생명환경농업추진 광역살포기 및 화물차구입의 경우 2008. 7. 1. 지출이 결정된 것으로 2008년도 제1회추경이 4월에 있었고 (2008. 4. 23. 의회승인) 지출결정액 중 21.9%인 39,876,300원을 불용 처리한 것으로, 이 사업이 예비비로 집행하여야 할 정도로 급박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, 결정된 금액중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한 것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고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요지:

- 문 : 생명환경농업추진 광역살포기 및 화물차 구입비의 경우 사업의 성질상 예산에 계상하고 계상된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하나 예비비로 집행한 것으로 예산 회계 질서상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?
- 답 : 예비비의 지출 결정에 있어 엄격하게 법을 적용토록 하겠음.
- 문 : 가뭄피해대책의 예비비도 2008.11.21일 집행결정이 된 것으로 이 사업 역시 2008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음.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의회와 사전에 협의라도 했으면 문제가 없지 않았나.
- 답 : 2008년 11월 우리지역에 심한 가뭄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가뭄 대책을 위한 국도비가 내시되어 그에 따른 군비 부담분을 일부 집행한 것임.
- 문 :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 했을 때에 한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일부는 예비비로 집행할 성질이 아님에도 예비비를 집행한 것으로 본 승인안에 대하여 승인을 해야 할지 상당히 고민스럽다.

- ◎ 답 : 예산편성시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예산에 계상하고 예상된 범위에서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금액만 집행 하도록 개선해 나가겠음.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 :

- 2009. 7. 1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

『별 지』

□ 일반회계

사 업 명	예 산 과 목				지출결정		지출원인행위		지출액		이월액 (라)	불용액 (가-다-라)	지 출 사 유
	정책	단위	세부	통계목	일자	금액(가)	일자	금액(나)	일자	금액(다)			
총 계						427,596,000		394,648,040		368,607,720		58,988,280	
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통제소 운영 경비	축산업 경쟁력 강화	가축 전염병 예방	가축 전염병 홍보 및 공약수의사 관리	201-01 (사무 관리비)	2008. 4.22	40,000,000		20,888,020	2008. 4.29	20,888,020	0	19,111,980	조류인플루엔자 고성군 유입방지를 위한 긴급 방제 통제소 운영 경비
생명환경농업 추진 광역사리 포기 및 화물차 구입	농가 소득 안정	친환경 농업 활성화	친환경 농업지원 사업	405-01 (자산 및 물품 취득비)	2008. 7. 1	182,000,000		168,164,020	2008. 8.22	142,123,700	0	39,876,300	생명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광역살포기 및 화물차 구입
가뭄피해예방을 위한 소류지 준설 및 관정개발	농촌 활력화 지원	농업재해 예방	한해대책 지원사업	401-04 (시설비)	2008. 11.21	37,500,000		37,500,000	2008. 11.24	37,500,000	0	0	가뭄지속에 따른 가뭄 피해예방을 위한 소류지 준설 및 관정개발 (보수)사업
가뭄지속에 따른 생활용수 부족 해소 위한 암반 관정 개발	상수도 관리	농어촌지역 마을 상수도 안정적 공급	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	401-04 (시설비)	2008. 11.21	168,096,000		168,096,000	2009. 1.20	168,096,000	0	0	가뭄지속에 따른 생활용수 부족으로 군민불편 해소를 위한 암반관정 개발 및 관로시설 사업

<근거법령>

지방자치법

제129조 (예비비)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지방재정법

제43조 (예비비)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 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지방재정법시행령

제48조 (예비비 사용의 제한) 업무추진비·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계상을 할 수 없다.

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

제10조 (예비비)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(지방교육세의 세입액을 제외 한다)의 100분의 1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